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24년 2월 | 2024/02 호

2023/2024 년 WIPO PCT 사용자 설문조사

WIPO가 직접 제공하는 PCT 관련 서비스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는 주 목적과 함께 PCT 서비스들의 개선점 파악을 위해 2023/2024년 최신 PCT 사용자 설문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PCT 공개언어 10개로 진행되고 1700여 명의 응답자가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선택형 문항 외에 응답자들이 의견을 작성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 결과와 작성된 상세 의견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WIPO의 PCT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PCT 사용자의 90%가 WIPO가 제공하는 PCT 관련 서비스들에 대해 매우 만족(39%)하거나 만족(51%)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요약본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en/docs/activity/pct-user-survey-2023-2024.pdf>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 기회를 놓치셨다면, PCT 사용자께서는 언제든지 PCT 법무 및 사용자 지원국(PCT Legal and User Relations Division)에 아래 이메일 주소로 의견이나 피드백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pct.legal@wipo.int

다음 번 PCT 사용자 설문조사는 2025/2026년에 시행됩니다.

PCT 뉴스레터 창간 30주년

3월은 PCT 뉴스레터가 창간된 지 30년이 되는 달입니다. 1994년 3월, PCT 뉴스레터 첫 호가 출간되었습니다. PCT 뉴스레터 독자들께서는 뉴스레터의 내용과 유용성에 대한 의견과 향후 개선점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공해주신 내용은 발췌하여 30주년 기념호에 실을 예정입니다. 2024년 2월 말까지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pct.newsletter@wipo.int

이메일 제목은 "PCT Newsletter: 30 years"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

2020 년 7 월 1 일부터 모든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보충적 조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참여관청으로서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WIPO Fee Transfer Service)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PCT 수수료가 한 관청(수납관청)에서 국제사무국을 거쳐 다른 관청(수혜관청)으로 전달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PCT/WG/12/20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36911

국제사무국은 2023 년 12 월 31 일 기준,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에 따른 참여관청별 PCT 수수료 전달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내역은 아래에서 2024 년 1 월 25 일자 공식 공지(PCT 공보(Gazette), 25 페이지부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index.html

PCT 정보 업데이트

미국 달러(USD)로 납부되는 국제출원료 및 취급료(여러 관청)

2024 년 3 월 1 일부로, 국제출원료, 30 매 초과시 용지당 수수료,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4 번 항목에 나온 전자출원 감면액(해당시), 그리고 취급료의 USD 등가액이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에 나온 대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해당 변동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www.wipo.int/pct/guide/en/)의 다음의 부속서들에 반영되었습니다.

- 부속서 C (수리관청): AM, AP, AZ, BH, BW, BY, BZ, CL, CR, DJ, DO, EA, EC, EG, GE, GH, HN, IB, IL, IN, IQ, JM, JO, KE, KG, KH, KZ, LR, MD, MW, MX, NI, OM, PA, PE, PG, PH, QA, RU, SA, SC, SV, SY, TJ, TM, TT, UA, UG, US, UZ, WS, ZM, ZW
- 부속서 E (국제예비심사기관): CL, EA, EG, IN, PH, RU, US

IB 국제사무국 (수수료)

2024 년 3 월 1 일부터,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납부되는 송달료 및 우선권서류에 대한 수수료의 USD 등가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송달료:.....	USD	117
우선권서류에 대한 수수료:	USD	59
항공우편 추가요금:	USD	12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IB) 업데이트)

유용한 도움말

출원인이 PCT 출원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

Q: 저는 미국의 지식재산 대리인으로, 독일 국적을 가진 미국 고객의 PCT 출원을 돕고 있습니다. 제 고객이 유럽 특허청(EPO)에 PCT 출원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대리인으로서 해당 고객을 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출원인이 PCT 출원을 할 수 있는 곳 또는 수리관청(RO), 그리고 출원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는 일차적으로 출원인의 국적과 거주국에 따라 결정됩니다.

PCT 규칙 19에 따라 출원인은 아래 중 하나에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i) 출원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국내관청 또는 그 체약국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관청
- (ii) 출원인이 국민인 체약국의 국내관청 또는 그 체약국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관청
- (iii) 출원인의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제사무국

PCT 제 2 조(xii)에 따라 “국내관청”은 복수의 국가들로부터 지역특허를 허여하는 임무를 위임받은 모든 정부 간 당국을 포함합니다. 출원인이 복수인 경우 그들 중 적어도 한 명에게 이러한 조건들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미국 고객이 미국 거주자라고 가정하면, 이는 고객이 미국 특허상표청(USPTO)(RO/US), 본인의 국적과 관련하여 독일 특허상표청(RO/DE) 또는 유럽 특허청(RO/EP)에 PCT 출원을 하거나, 아니면 국제사무국(RO/IB)에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발명을 한 경우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외 다른 세 수리관청 중 한 곳에 국제출원을 하기 전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해외출원 허가(foreign filing license)를 받거나, 아니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동일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먼저 하고 해당 선출원에 대해 국가안보 지시(national security order)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로 6 개월이 경과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140.html> 참고).

국제단계 동안 대리인으로서 해당 출원인을 대리할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판단은 출원이 제출된 수리관청에 따라 달라집니다(PCT 규칙 90.1 참고). 각 수리관청은 대리인에 관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WIPO 는 이를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에 반영합니다(<https://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국제사무국이 수리관청인 경우, PCT 규칙 83.1 의 2에 따라, 출원인의 거주지 또는 국적의 국내 또는 지역관청에 대해 절차를 밟을 권한이 있는 자만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유럽 특허청이나 독일 특허청에 대해 절차를 밟도록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미국 특허상표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출원에 대해서만 해당 고객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 유럽 특허청(RO/EP)과 독일 특허상표청(RO/DE)에 대해 (이들 관청에 대해 절차를 밟도록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 하에) 대리인으로서 출원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제한되어도, 해당 고객을 대신해 이들 관청에 PCT 출원을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기록될 수 없는 경우, PCT 규칙 4.4(d)에 따라 “통신용 주소(address for correspondence)”로서 기록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로써 보통 출원인이나 출원인의 대리인에게 전송되는 통신을 수신하실 수 있고, 출원인을 대신해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용 주소”로서는 출원인의 대리인으로서 출원서(또는 모든 후속 제출서류)에 서명하실 수 없습니다.

출원인의 서명을 받지 못하시면, 출원에서 누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모든 서명은 PCT 제 14조에 따라 흠결로 간주됩니다(PCT 출원인 가이드 https://www.wipo.int/pct/en/guide/ip06.html#_correction_defects 참고). 해당 흠결로 출원인이 국제출원일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효한 서명이 들어간 대체용지를 추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출원인이 복수이고 이들 출원인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인이 없는 경우, 출원서에 출원인들의 이름이 기재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된 특정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할 자격이 있는 제일 앞에 기재된 출원인이 규칙 90.2(b)에 따라 대표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출원인들이 직접 본인들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선임한 경우 제외 - PCT 뉴스레터 2014/07-08 호(영문판) 유용한 도움말 “The importance of the order in which applicants are named in the request form where no common agent has been appointed” 참고).

질문자께서 해당 국제출원을 편리하게 제출하는 방법은 ePCT 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PCT 출원을 생성하는 사용자는 eOwner 로 설정되어 ePCT 를 통해 PCT 출원 절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서명(external signature)” 기능을 이용하면 승인받은 서명인(여기에서는 출원인)이 ePCT 에 접속하지 않고도 ePCT 에 있는 작성 중인 문서에 서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직접 출원인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해 출원 제출 전에도 출원인이 출원에 접근해 필요한 곳에 서명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질문자께서 출원인을 위해 통신문 초안(예를 들어, PCT 규칙 92 의 2 에 따른 변경 요청 서한, 제 19 조에 따른 보정 요청 서한, 또는 출원의 취하)을 작성하고, 출원인이 해당 통신문에 외부서명으로 또는 ePCT 에서 직접 서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RO/IB)에의 국제출원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ko/filing/filing.html>

ePCT 를 통한 출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567>

본 주제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 PCT 뉴스레터 호들에 나온 유용한 도움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5/04 호\(영문판\)](#): 수리관청에 대해 출원인을 대리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통신용 주소 기재하기

[2019/03 호\(한국어판\)](#): 출원 전략: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과 국내관청(또는 해당 시 지역관청) 중 어느 곳에 국제출원을 할 지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들(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민의 예)

[2020/06 호\(한국어판\)](#):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자격(국제출원이 다른 국가의 출원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CT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사업

새로운 양방향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사업(캐나다 지식재산청 - 브라질 국가산업재산기관(INPI))

이례적 휴무일

필리핀 지식재산청

미국 특허상표청(USPTO)

PCT 정보 업데이트

BY 벨라루스 (수수료)

EP 유럽 특허청 (수수료)

IS 아이슬란드 (수수료)

US 미국 (수수료)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유럽 특허청, 필리핀 지식재산청, 이스라엘 특허청, 국가산업재산기관(칠레),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보충적 조사료 (유럽 특허청)

국제예비심사 관련 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 (유럽 특허청)

일본 특허청에서 시행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예정된 웨비나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새로운 ePCT 동영상 튜토리얼